

<p>제2021-37호 2021년 2월 25일(목)</p>	<p>시  보 여수시</p>	<p>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8 FAX) 659-5803

고 시

- 여수시 고시 제2021-90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 3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1-599호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4
- 여수시 공고 제2021-614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9

기 타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.

허가번호 (허가일)	점용·사용 장소	점용·사용 면적 (㎡)	점용·사용 목 적	변경사항 (대표자변경)		피 허가자		비고
				변경전	변경후	주 소	성 명	
2020-082 (2020. 9.7.)	여수시 경호동 607, 632, 659-2, 674-2번지 지선 공유수면	3,094㎡ (직접3,094㎡)	토사 유출 방지용 오타방지막 설치	기륜	양회국	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4, 2층(학동)	위본건설(주) 대표 양회국	

2021. 2. 25.

여 수 시 장

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

「농어촌정비법」 및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25일

여수시장

1. 사업기간 : 2021. 2. ~ 2021. 12.

2. 신청서 접수 및 장소

- 신청기간 : 2021. 2. 25. ~ 2021. 3. 18. (15일간, 토·일·공휴일 제외)
- 접수장소 :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- 구비서류 : 신청서, 기존주택 및 신축예정지 사진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재산세 과세증명서(사업신청자,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)

3. 지원 대상

- 대상지역 : 농촌지역
 - 읍·면의 지역
 - 동 지역(생산·보전녹지지역, 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, 생산·보전관리지역)
- 사업대상자
 -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
 - ※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는 사업 신청 불가
 -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(세대원 포함)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
 - 도시지역(洞)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
 - ※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
 - 내·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(숙소)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

어업분야 입주기업(법인)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(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)

※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(세대원 포함)는 사업 신청 불가

4. 지원 기준

- 사업규모 : 50동
- 사업범위 :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, 리모델링
- 대상주택 : 연면적 150㎡이하 주택
 -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㎡를 초과할 수 없음
 - 용도는 주거용(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)만 가능
 - 다세대, 다가구, 근린생활시설, 민박, 상가 등 혼용 제외
 - 기존주택(무허가 포함) 철거 이행(귀촌자 및 무주택자는 해당 없음)

5. 세금 및 수수료 감면

- 세금 :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(전액면제)
취득세액 280만원 초과(280만원 공제)
- 지적측량수수료 : 지적측량수수료 30% 감면
(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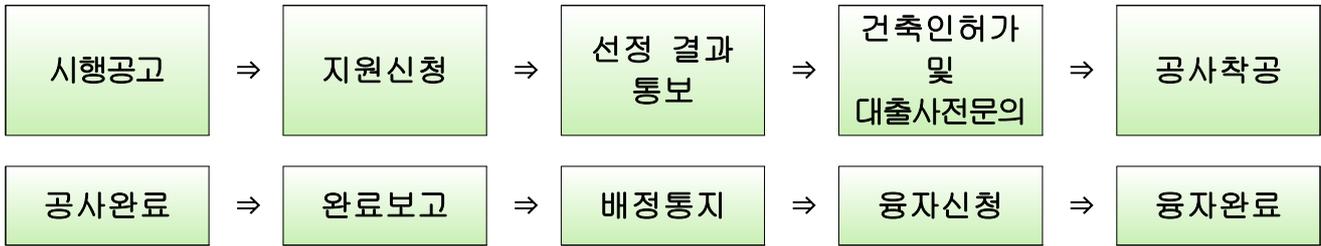
6. 융자조건

- 대출한도
 - 신축·개축·재축 : 최대 2억원, 증축·대수선·리모델링 : 최대 1억원
 - ※ 증축, 대수선, 리모델링 등은「건축법」상 건축신고 등을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
 - ※ 융자는 대출기관(농협)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(신용등급, 담보능력 등)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.
- 대출금리 : 고정금리(연리 2%)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- 상환조건 :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,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
 -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

7. 사업실적확인서

-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실적확인 신청서와 사업실적(주택건축비)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
 - ※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(사업실적확인서 금액) 내에서 대출기관(농협)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(신용 및 담보평가 등) 결과에 따라 결정

8. 지원 절차



9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철거예정 건축물에 담보 설정, 보존 필요, 민·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나.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.
- 다.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, 수정,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(세대원* 포함)는 신청이 불가(재산세 과세자료,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확인)
 - *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,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
- 마.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택 건축 신고 및 인·허가 등 건축행위 추진
 - *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선정이 건축 신고·허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- 바.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.
- 사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허가민원과(659-40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

1. 사업신청자 정보

- 성명: • 생년월일: •전화번호:
 - 현 거주지(주소):
 - 사업대상지(주소):
 -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 : 세대주 (), 배우자 ()
- ※ 시·군·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,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

2. 사업대상자 여부 (※사업시행지침 2~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)

'1)'에 해당, '2)'에 해당, '3)'에 해당, '4)'에 해당, 기타(신규마을)

4. 사업 내용 : 신축(개축, 재축 포함), 증축, 리모델링(대수선 포함)

※ 증축, 대수선, 리모델링 등은 「건축법」상 행정절차(건축신고 등)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

5.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(※해당하는 모든 란에 '✓' 표기)

슬레이트 지붕개량자, 빈집자진철거자, 어린자녀(0세부터 초등학생까지)보육가정, 다문화가정,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·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, 귀농·귀촌을 하려는 자, 근로자 숙소를 제공 하려는 자,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(전원)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(입주예정자)

6. 기타 해당 여부 (※해당하는 모든 란에 '✓' 표기)

사업대상 기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지 여부

사업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인지 여부

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

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

7. 기타 제출서류('지침 본문 'II-1-나'호의 4)대상자'만 해당)

-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허가서(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)
- 「근로기준법」및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

※ 본인은 개인식별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, 재산세 과세자료,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·군·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, 해당 시·군·구 및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.

※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(세제혜택 취소 포함) 및 용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.

 년 월 일,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사 진 대 장

사 업 명	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		
사 업 자	주 소		성 명
사업위치			
사업위치	위치도		
사업 전	현장 또는 기존건물 사진 촬영		

방치선박 제거 공고

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며,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**2021년 3월 15일(월)**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월 25일

여 수 시 장

1. **공 고 기 간** : 2021. 2. 25. ~ 2021. 3. 15.(18일간)

2. **제거대상선박** : 6척(붙임 참조)

3. **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**

가.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「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)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4. **기타사항** : 문의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(☎061-659-3921)로 연락바랍니다.

제거대상 선박 내용

관리번호	선명	선질	톤수	방치장소
2021-1	미상	FRP	1톤급	여수시 울촌면 봉전리 봉전항 부근
2021-2	미상	목선	1톤급	여수시 울촌면 봉전리 봉전항 부근
2021-3	미상	FRP	4톤급	여수시 울촌면 취적리 1461-21
2021-4	미상	FRP	1톤급	여수시 화정면 백야해안길 44-36 인근
2021-5	미상	FRP	1톤급	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92번지 앞
2021-6	미상	FRP	2톤급	여수시 신월로 448-21 인근 해안가

여수시 공고 제 2021-614호				
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				
발견장소	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봉전항 부근			
선 박 제 원	선명(명칭)	미상	선박(어선)번호	미상
	선 적 항	미상	톤 수	1톤급
	주요치수			
관 리 청	여수시청	관 리 번 호	제2021-1호	
제거 예정일자	2021년 3월 15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			
제 거 방 법	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			
공매장소 및 일시	-			
입찰 보증금	-			
방치선박 전경사진				
<p>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<u>2021년 3월 15일(월)까지</u>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3월 15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수 시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 : 수산경영과 061-659-3921)</p>				

여수시 공고 제 2021-614호				
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				
발견장소	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봉전항 부근			
선 박 제 원	선명(명칭)	미상	선박(어선)번호	미상
	선 적 항	미상	톤 수	1톤급
	주요치수			
관 리 청	여수시청	관 리 번 호	제2021-2호	
제거 예정일자	2021년 3월 15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			
제 거 방 법	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			
공매장소 및 일시	-			
입찰 보증금	-			
방치선박 전경사진				
<p>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<u>2021년 3월 15일(월)</u>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3월 15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수 시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 : 수산경영과 061-659-3921)</p>				

여수시 공고 제 2021-614호				
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				
발견장소	여수시 읍촌면 취적리 1461-21			
선 박 제 원	선명(명칭)	미상	선박(어선)번호	미상
	선 적 항	미상	톤 수	4톤급
	주요치수			
관 리 청	여수시청	관 리 번 호	제2021-3호	
제거 예정일자	2021년 3월 15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			
제 거 방 법	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			
공매장소 및 일시	-			
입찰 보증금	-			
방치선박 전경사진				
<p>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3월 15일(월)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3월 15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수 시 장 (담당자 : 수산경영과 061-659-3921)</p>				

여수시 공고 제 2021-614호				
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				
발견장소	여수시 화정면 백야해안길 44-36 인근			
선 박 제 원	선명(명칭)	미상	선박(어선)번호	미상
	선 적 항	미상	톤 수	1톤급
	주요치수			
관 리 청	여수시청	관 리 번 호	제2021-4호	
제거 예정일자	2021년 3월 15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			
제 거 방 법	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			
공매장소 및 일시	-			
입찰 보증금	-			
방치선박 전경사진				
<p>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<u>2021년 3월 15일(월)까지</u>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3월 15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수 시 장 (담당자 : 수산경영과 061-659-3921)</p>				

여수시 공고 제 2021-614호				
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				
발견장소	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92번지 앞			
선 박 제 원	선명(명칭)	미상	선박(어선)번호	미상
	선 적 항	미상	톤 수	1톤급
	주요치수			
관 리 청	여수시청	관 리 번 호	제2021-5호	
제거 예정일자	2021년 3월 15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			
제 거 방 법	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			
공매장소 및 일시	-			
입찰 보증금	-			
방치선박 전경사진				
<p>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<u>2021년 3월 15일(월)</u>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3월 15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수 시 장 (담당자 : 수산경영과 061-659-3921)</p>				

여수시 공고 제 2021-614호				
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				
발견장소	여수시 신월로 448-21 인근 해안가			
선 박 제 원	선명(명칭)	미상	선박(어선)번호	미상
	선 적 항	미상	톤 수	2톤급
	주요치수			
관 리 청	여수시청	관 리 번 호	제2021-6호	
제거 예정일자	2021년 3월 15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			
제 거 방 법	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			
공매장소 및 일시	-			
입찰 보증금	-			
방치선박 전경사진				
<p>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3월 15일(월)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3월 15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수 시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 : 수산경영과 061-659-3921)</p>				